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선배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3일

3. 제안사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3조)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
- 도 협의회와 시·군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
-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나.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
다.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교부, 관리, 평가,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르도록 규정함.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는,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개정(1983. 5. 21.)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1984. 2. 28.)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, 1985년 3월20일, **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충북지부 형식으로 창립됨.**
 - 이후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전부개정(시행일 1998. 7. 1.)에 따라 시·도 협의회를 지부 형식이 아닌 별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, 1998년 11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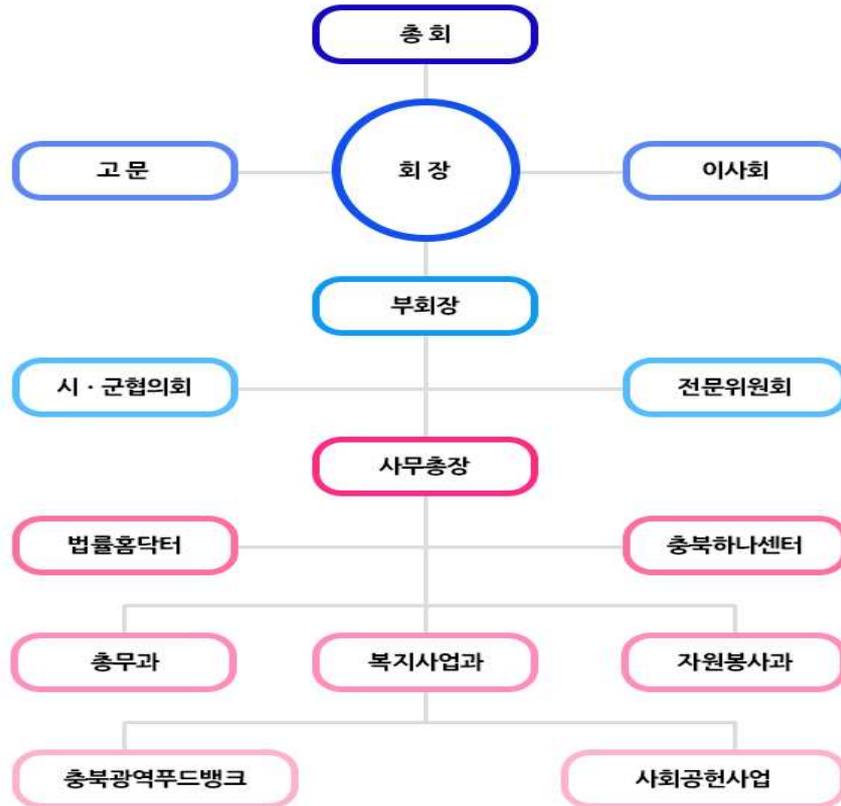
□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개요

- 설립근거법령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
- 위 치: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87 충북사회복지센터 3층
- 성 격: 사회복지법인으로 민간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개인을 포괄하여 종교, 기업, 시민단체 등과의 상호연계·협력을 통해 민간 중심의 지역 복지서비스 지원을 대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
- 미션·비전
 - 미션: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
 - 비전: 최적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·관 협력복지모델의 표준
- 주요기능
 -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 건의
 - 사회복지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·조정
 -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·협력
 -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·복지증진
 -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, 각종 간행물 발간 및 홍보
 - 도 내 시·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 증진

○ 주요 지원·위탁사업

-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
- 충북광역푸드뱅크 사업
- 통일부 지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(하나센터) 운영
-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위탁 운영

○ 조직도



○ 예산(2021년 기준)

- 총사업비: 291,642천 원(도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: 219,965천 원(4명, 평균 4,582,604원)
 - 운영비: 11,377천 원(공공요금, 수용비 및 수수료 등)
 - 사업비: 60,300천 원(조사연구, 사회복지정보화, 출판홍보, 법률홍닥터 사업 등)

○ 본 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 - 법률에서 정한 사업 외에도, 도 협의회와 시·군 협의회 간의 협력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함.
 - 특히, 시·군 협의회 간의 협력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사업은 협의회가 복지영역에서 민간을 대표하는 공식적 조직이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, 이와 관련해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음. 또한 본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요구된 바 있음.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3조(사회복지협의회)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“중앙협의회“라 한다)와 시·도 단위의 시·도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“시·도협의회“라 한다)를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단위의 시·군·구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“시·군·구협의회“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 건의
2. 사회복지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·조정
3.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·협력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

- 안 제4조는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 - 제1항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,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바,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함.

- 제2항의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경비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제2항에는 “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” 고 규정하고 있음. 이와 관련해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17조에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는 바,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.

다만, 법령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어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기에 조문을 두는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타당할 수 있으나, 안 제5조의 보조금의 준용 규정과 연계해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확히 자치법규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수행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
제17조(각 협의회의 운영경비)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안 제5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임.
 -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해,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고,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 및 운영비로 지원된 보조금이 적합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,
 - 복지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민간 복지자원 활용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 민간 복지 영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
- 또한, 본 조례안은 관련 기관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조례안 예고,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.